##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8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 허종식 · 윤관석 · 송영길

이성만 • 정일영 • 김정호

김교흥 • 유동수 • 박찬대

윤준병 • 윤상현 • 김주영

서영석 · 남인순 · 김성주

이용선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환수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3 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 및 제83 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 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도지 사

제8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부과·징수한 과징금의 귀속 및 귀속 비율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2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
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
	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u> 따라야 한다.</u>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
	<u>장관</u>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
	<u>통부장관</u>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u>시・도지사</u>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체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82조제3 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 다.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정보 ·자료의 제공 요청, 부과·징 수한 과징금의 귀속 및 귀속 비율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는 제82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